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편

미국에서 기업결합 붐

최근들어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붐으로 후라튼 반트러스트국 차장(기업결합담당)은 지난 8월 28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바쁘다"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집행당국인 사법성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금년에 취급한 기업결합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0%가 증가했다. 양당국은 1995회계년도(1994년 10월 1일~1995년 9월 30일) 중 약 2,700건의 기업결합건을 심사했다(1994회계년도는 2,300건임).

금년에 와서 발표된 주요 기업결합건은 기술 분야에서 IBM/Lotus, 오락 분야에서 Walt Disney/Capital Cities, 의약품 분야에서 Glaxo/Wellcome, 그리고 최근 은행업인 Chemical/Chase Man-

hattan의 합병건은 거래가액이 100억불로서 국내 최대의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업결합붐이 일어난 최대요인은 기업의 최고위층이 관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강하고 또는 전략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제휴로 자기의 경쟁상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후라튼 반트러스트국 차장은 유사 산업끼리의 전략적 기업결합은 자동차 부품 메이커 2사의 합병과 같이 동일산업 내의 기업끼리 하는 종래형의 합병보다 복잡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기업결합 후의 기업이 당해 분야에서 과도하게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작년의 AT&T사에 의한 Mccaw Cellular사의 취득이 있다. AT&T는 국내 최대의 장거리 전화회사이다. Mccaw Cellular사는 최대의 이동전화회사이며 이 건의 취득가액은 126억불이다.

빙가망 반트러스트국장이 금년초에 의회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반트러스트국은 이 건에 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이동전화기의 판매 및 기타의 전화 서비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사하는데 50건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21건의 선서부조서의 작성과 수백상자의 문서를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T사는 사법성에 의한 Mccaw Cellular사의 고객이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장거리 전화회사에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화해안(和解案)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 때문에 사법성의 직원은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 사법성은 합병심사 때문에 법률경제 전문가이 외에 60명에서 80명의 검사를 충당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대부분은 정부의 관여없이 진행되지만 약 4%는 이러한 심사 때문에 기업결합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95. 8. 29. Washington Time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기만적인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거래규제 규칙 제정

미연방거래위원회 (FTC)는 8월 16일 기만적인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상술) 등을 금지하는 거래규제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FTC가 작년 8월에 시행한 텔레마케팅, 소비자 사기 및 남용방지법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서 금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연간 약 4,400억불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산업에 있어 소비자가 400억불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과 1991년 이래 고령자층, 마리·테레사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 등 모든 계층으로부터 47,000건의 고정이 FTC에 접수되고 또한 주정부 부를 골치 아프게 한 텔레마케팅 등을 들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FTC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1만불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사법장관은 텔레마케팅 사기의 가해자에 대하여 연방재판소에 제소하고 전국 규모의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텔레마케팅 업자는 전화를 시작할 때 자기의 명칭, 무엇을 판매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경품

부 판매촉진시에는 당해 경품의 구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즉석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텔레마케팅 업자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사이에는 전화를 걸어서는 안된다.

(3) 텔레마케팅 업자는 전화를 걸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어서는 안된다.

(4) 텔레마케팅 업자는 크레디트카드 또는 은행 정보에 관하여 질문하기 전에 제공하게 되는 물건의 총비용 및 적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5) 텔레마케팅 업자는 서면 또는 전화세일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 의하여 소비자가 허가한 경우에만 소비자의 은행구좌에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러한 테이프는 텔레마케팅 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사전개시 의무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6) 텔레마케팅 업자는 회복실(recovery room)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든가 타의 텔레마케팅 업자에 의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제물로 하는 기획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획으로 텔레마케팅 업자는 사기당한 소비자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번 규칙은 소비자 단체나 사업자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 Recovery Room이란 예를 들면 Seepstakes(내기 경마)에서 손해를 본 소비자를 다시 한번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95. 8. 17. Wall Street Journal, ATRR)

미국 타이어 산업, 반트러스트 조사 대상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미국 타이어 산업에 대하여 반경쟁적 관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법무부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oodyear Tire & Rubber C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상적인 분기별 서류에서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굿이어 타이어사는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올해 4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조사는 클리블랜드 소재 법무부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굿이어사는 당해 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대배심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당해 서류에서 밝혔다.

“우리는 이 조사가 전 산업에 걸친 것이며 미국에서 자동차나

트릭의 타이어를 제조하는 모든 회사가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오하이오주 Akron에 소재한 굿이어 본사의 공보담당 부사장인 John Perduyn은 말했다.

Perduyn은 굿이어사는 자연 고무 구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세 배, 네 배가 된” 이후인 작년에 제품가격을 인상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즉시 정확한 가격 인상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B.F. Goodrich와 Uniroyal과 같은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프랑스의 미쉐린사나 일본의 브리지스톤사와 같은 외국 회사들도 이들이 미국 내에서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브리지스톤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Bridgestone/Firestone Inc.는 “우리는 타이어 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알고 있다. Bridgestone/Firestone사에 관한 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당해 조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나면 우리가 반트러스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테네시 주 내쉬빌에 소재한 Bridgestone/Firestone사의 대변인은 조사의 진행사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당해 회사는 정부 조사관들

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왔다고 밝혔다.

미쉐린사와 Cooper Tire & Rubber Co.의 관계자들로 부터의 논평은 얻을 수 없었다. (95. 8. 24.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미 법무부, 감열지 가격카르텔에 대해 미쯔비시·신오지 제지에 벌금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팩시밀리용 감열지의 국제 가격 카르텔에 대하여 미쯔비시(三菱)제지본사와 신오지(新王子) 제지를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양사는 합계 355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감열지의 가격카르텔에 관하여는 94년 7월에 신오지 제지의 미국 현지법인, 미쯔비시상사의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등이 적발되었었다. 법무부의 빙거먼 반트러스트국장은 “가격카르텔은 누가 어디에 관여하든지간에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쯔비시제지는 벌금으로 180만 달러를, 신오지 제지는 175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사는 91년 7월부터 92년초까지에 걸쳐 가격카르텔에 참가하였으며, 감열지의 가격은 약 10% 인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95. 9. 27. 일본경제신문)

미국 사법성, 전기 통신 분야 기업결합 반대

미국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7월 13일 국제전화 서비스의 경쟁확보를 위하여 세계의 주요 전기통신회사 3개사가 세계적(Global)인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공동으로 체결한 거래 내용을 변경토록 하기 위하여 제소했다.

반트러스트 당국은 당초 신청된 거래 내용(미국의 장거리 전화회사와 외국의 독점기업과의 결합)이 미국의 전기통신회사를 경쟁상 불리하게 하여 국제전기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감쇄(減殺)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이 미국의 「스프링트」사의 주식을 40억불에 매입한 후 전기통신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게 될 합작회사를 스프링트사와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에 대하여 반트러스트 당국은 7월 13일 워싱턴 특별구 연방지재에 동의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에는 데이터나 음성외의 송신도 포함된다.

빙가만 반트러스트 국장은 이에 대하여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 네트워크와 독점적 서비스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되고 경쟁에의 위협을 야기시킬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동의 판결안은 모든 경쟁자에게 평등한 활동 영역을 확보케 함으로써 국제적인 전기 통신에 있어 주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상호경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동의 판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개요

1. 스프링트사(캔사스주 웨스트우드 소재)는 장거리 전화 서비스의 주요 제공 회사로서 연간 소득은 126억불임.

2. 독일 텔레콤(본사는 본에 소재)은 독일의 독점사업자로서 세계 제2위의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회사임. 1994년도 연간 소득액은 440억불임.

3. 프랑스 텔레콤(본사 파리)은 프랑스의 독점사업자로서 세계 제4위의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회사임. 1994년의 연간 소득은 280억불임.

나. 조치안

1. 스프링트사와 합작회사는 경쟁자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까지 서비스를 지배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2. 스프링트사와 합작회사는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의 네트워크 및 통산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기타 정보를 이용하는데 따른 요금과 조건을 공표하여야 함.

3. 스프링트사와 합작회사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의 전기통신 네트워크와의 관계 때문에 유리하게 진입하게 되는 반경쟁적인 우위성을 취득해서는 안됨.

4.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을 스프링트사와 합작회사의 경쟁자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네트워크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없음.

본 건 동의 판결안은 반트러스트국이 작성한 경쟁평가서(competitive impact statement)와 같이 연방 관보에 공시되고 60일간의 공적 의견(public comment)을 받은 후 공적 의견에 답변을 하는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동의 판결에 대한 등록(entry)을 청구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주위원회(EU)에서도 심사중에 있다.

본 건은 1994년 9월에 미국의 전기통신회사와 외국의 전기통신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제소한 두번째의 사건이다.

최초의 사건은 영국의 전화회사 British Communication사(세계 제4위의 전화회사)에 의한 미국의 전화회사 MCI(세계 제5위의 전화회사) 주식의 일부 취득(43억불 상당)과 양사에 의한 합작회사 설립 계획으로서 반트러스트국은 상기 합작회사가 영국 내의 BT 네트워크에 우선적으로 진입이 가능하여 타경쟁자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쇄할 수 있다 하여 MCI와 합작회사가 BT의 네트워크에 진입시 요금 등 조건을 공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동의판결의 제소 사건이다.

(95. 9. 27. 미국 사법성 신문)

미국 사법성, 가격협정 혐의로 ADM 곡물회사 조사

미국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식품이나 가축 사료용 첨가물의 판매에 관하여 반경쟁정책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아차·다니엘스·미드랜드」사(ADM사)를 포함한 곡물회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관을 통하여 지난 6월 28일 언급하였다.

동 보도관은 본건 조사가 국제적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조사대상 기업 내용은 밝히지를 않았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과 조사대상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기업

(1) ADM사(일리노이주 소재): 세계 최대의 곡물 가공업자로서 주로 대두가공과 소맥제분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약 114억불, 수익 4억8천400만불, 미국 곡물 가공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

(2) Cargill사(미네소타 소재): 미국 곡물가공시장의 5분의 1을 점유

(3) C.P.C International(C. P.C) : 미국 곡물시장의 12%를 점유

(4) A.E. Staley Manufacturing Co. : 영국의 Tate & Lyle PLC사의 자회사이며, 미국 곡물 가공시장의 약 5분의 1을 점유

2. 조사대상 상품

(1) 고과당 콘시럽 : 청량음료에서 추잉껌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사탕 대용품으로 옥수수로 만들게 되며 시장규모는 약 26억불임.

상기 4사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약 85%이며, ADM사의 시장 점유율은 33~34%로 알려져 있음

(2) Lysine(아미노산의 일종) : 사료용 첨가물로서 옥수수로 만듦

(3) 구연산 : 식료 및 음료수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옥수수로 만들며 산미(酸味)가 있음
보도에 의하면 반트러스트국은 ADM사의 간부로부터 정보를 입수 후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전기 4사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장(Subpoena)을 발급하였다.

ADM사에 따르면 ADM사는 사무실에 대하여 수색을 받았으며 동사 간부는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ADM사를 제외한 상기 3사는 본건 조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상기 4사

모두가 조사에 충분히 협력할 뜻을 언급하였다.

(일본 공정취인 95년 8월호)

일본편

경쟁 제한, 민간 제소의 길 열려 -산업구조심의회 월말에 보고, 상관행 시정·법개정 촉구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과 안정 성장을 위해 2000년까지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열거한 산업구조심의회(통산성의 자문 기관)의 보고서의 전모가 21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높은 비용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민간 거래 관행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쟁제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민간기업 및 개인에 의한 사적 소송(사소) 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모험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및 연금 기금의 운용규제 및 사채의 발행 기준의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 보고서를 9월 말에 발표하고 공정취인위원회, 대장성 등 관계관청에 대해 실현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시모토 통산상은 자민당총재 선거에 입후보할 때 「일본경제의 재건 시나리오」 책정의 필

요성을 호소했다. 통산성은 총재 선거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사실상 하시모토가 내세운 경제정책 구상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의 제언은 내년부터 5년간을 대상으로, 첫 해에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거의 신장하지 않는 제로 성장에서 탈피하며, 3년째 되는 해까지 3%선의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경제 전망을 책정했고, 그 위에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온 결과 통신 및 운수 등 기간 서비스 요금이 높아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이 제언의 배경이다. 미국·유럽형 경제사회에 일본을 근접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트러스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민간기업이 손해 배상을 구하는 사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해의 증명이 어려워 일본에서는 사소는 거의 없고, 공취위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적발 이외에는 사실상 경쟁제한적인 민간거래 관행을 시정할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 산구심보고서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 행위를 동법의 금지청구 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의 소송제도를 확립 ② 공취위의 형사고발 체제를 강화 ③ 중소기업청에 의한 불법 하청 비리의

적발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규제완화책으로서, 우선 금융면에서 투자신탁에 대한 장외 등록 주식에의 투자 비율 규제, 연금기금의 운용 기준, 사채 발행 기준 등을 완화하고, 투자자의 자금을 모험기업 등에 공급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원칙적 자유화, 트럭 및 내항해운의 진입 규제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관청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종적인 배분 방식을 고쳐, 「국제 거점 공항 등 기업의 국제 전개에 대응한 물류 시설」, 「택사소 등 남녀 공동 참여사회 실현의 시설」, 「특별 양호노인 주거 등 고령화 대응시설」이라는 구조개혁 투자를 우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대다수는 대장성, 운수성, 노동성 등 통산성 이외의 관청이 담당하고 있다. 목표 연도까지 구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관청도 움직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불가결하다.

(95. 9. 22. 일본경제신문)

일본 공정거래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동향

미국은 최근 일본에 대해 일본 공취위 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계열 거래·담합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일 자동차협상시('95. 6. 28.),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판매량 저조가 정부규제 외에도 제조업체·판매업자간 계열거래 등 민간간의 불공정한 상행위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공정취인위원회 조직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11월, R. 오아 주일미상의 ODA위원장도 일본의 원조 프로젝트 입찰 관련 정보가 일본 기업에게 사전 누설됨으로써 미국 기업의 참여가 저해받고 있다며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미·일 자동차협상시('95. 6. 28.), 일본 하시모토 통산상은 캔터 대표의 요구에 대해 공취위의 확대개편을 「일본 정부의 공약」으로서 약속하고 「미·일 자동차협상 합의문('95. 8. 30 체결)」에서 독점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합의문 중 공정거래 보장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정부는 불공정 관행의 제거를 약속한다.

② 일본 정부는 독금법 준수

를 위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지한다.

③ 공정취인위원회는 독금법을 엄격히 운용한다.

④ 93년 8월에 실시했던 자동차업계에 대한 독금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일부 지적되었는 바, 공취위는 이의 시정을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감시를 계속한다.

⑤ 독금법상의 문제점이 보고될 경우, 공취위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대미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공정거래분야 신다자협상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공취위의 개편 등 공정거래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취위의 사무국을 사무총국으로, 3개 부를 3개 국으로 승격시키고 책임자를 사무국장(국장급)에서 사무총장(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공정거래분야 대일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경제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계열 거래·담합 행위 등의 불공정 관행이 미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에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 협상 과정에서 공정거래의 보장을 강조한

것은 배타적 대리점 체제 등 일본 자동차 시장의 반경쟁적 판매 제도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수출 확대에 최대 장애요인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이에 따라 일본 공취위의 인원 증대·기능 강화 및 독금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일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의 대일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통상 교섭 관행을 고려할 때, 조만간 일본에 이어 우리에게 대해서도 공정거래 제도 강화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 발동과 미·일 구조조정협약의 등 일본과의 통상교섭 경험을 수년 후 아시아 여타국과의 협상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95. 9. 18.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취위 히다찌 제작소 등 9사에 과징금 납부 명령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수도사업단이 발주한 전기 설비공사의 수급업체인 히다찌(日立) 제작소 등 9개사에 대하여 독금법 위반 피의사건을 심사한 결과 1993년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월 6일 9개사를 6월 7일 9개사의 종업원 17명, 사업단의 전직원 1명을 독금법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다.

1992년도와 1993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2일 과징금

을 납부토록 명령을 하고, 사업단에 대하여서는 입찰시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1. 과징금 납부명령

히다찌 제작소 등 8개사에 대하여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과징금 총액 10억 3636만엔을 1995년 9월 13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2. 사업단에 대하여서는 입찰에 있어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사업단의 직원이 연간 발주 예정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 위반 행위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및 1993년도에 9개사의 위반행위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9개사는 1990년도 이후 이러한 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사업단 직원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 체제를 고치고 강화하여 발주와 관련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

(2) 임직원 전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철저히 주지하도록 할 것

(3) 이상 (1) 및 (2)항의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토록 할 것 등이다.

※ 본 사건은 일본 히다찌(日立), 도시바(東芝), 미쯔비시(三菱), 후지(富士), 메이덴샤(明電舎) 등 9개사가 컴퓨터 제어펌프 및 통신 전기장비 제품의 입찰에 있어 계약액의 75%를 점유키로 한 담합사건임(본 협회 발간 공정경쟁지 제2호 P77 참조).

(일본 공정취인 95년 8월호)

구주위원회편

은행의 경쟁제한적 영업 관행에 대한 EU 집행위의 개혁적업 동향

구주위원회는 역내 은행의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에 대한 개혁을 위하여 EU경쟁법을 적용한 ① 회원국간 은행 지불 및 이중수수료 부과 방지에 관한 지침안과 ② 은행간 결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95. 9. 13.)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혁안의 주요 내용

(1) 회원국간 은행 지불 등에 관한 지침안

① 회원국간 은행지불: 고객·은행간 합의된 별도의 기한이 없는 한 송금은은행은 고객의

송금 요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송금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취은행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수취인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지불 지연시 이자 지불: 기한 내 지불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송금·수취 은행 모두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함.

③ 이중 수수료 부과 금지: 송금 은행이 수수료를 공제한 경우, 수신은행 및 중개은행은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중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④ 지불 실패시 환불 보장: 송금은행이 분실 등 지불에 실패한 경우 고객이 맡긴 송금액은 물론 이자 및 수수료 모두를 환불하여야 함.

⑤ 대고객 정보 공개: 송금은행은 고객에게 송금기간·수수료 산정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하며, 송금 후에는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은행간 결제 시스템 가이드라인

① 은행간 결제 시스템의 가입·탈퇴: 은행간 결제 시스템은 신규회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기존회원의 타시스템 가입을 방해해서는 안됨.

② 운영 기준: 은행들은 시

스템 운영에 관한 기준, 즉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종류 및 질, 안전 및 위험에 관한 관리 규칙 등에 합의할 수 있음—그러나, 이를 고객에 대한 가격담합, 고객의 은행 선택 및 변경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됨.

③ 가격 경쟁: 대고객 수수료 등 은행간 가격담합을 해서는 안됨.

④ 무차별 대우: 송금지를 불문하고 외환이 국내 결제 시스템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입금된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함.

2. 동 개혁안의 채택 전망 및 그 영향

(1) EU 집행위의 은행영업 관행 개혁안은 EU 재무장관이 사회에서 논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동 개혁안은 그동안 유럽통화기구, 경제사회이사회, EU의회 등 관련기관 및 금융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 바, 그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동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EU은행들은 '97년부터 대고객 수수료 통일 등 가격담합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또 회원국간 은행을 통한 지불(송금)시 일정 기간 내 지불 절차를 마쳐야 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

(95. 9. 20. 공정거래위원회)

구주위원회, 위성TV 방송 합작회사 설립을 금지

구주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노르웨이 위성방송 합작회사 (Joint Venture) 설립에 대하여 지역 위성방송, 유선방송 및 유료TV 방송분야에서 경쟁을 배제한다하여 금지키로 했다.

본건 합작회사(Nordic Satellite Distribution, NSD)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과 미디어 산업에서 강력한 힘을 갖는 3사(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내 전기 통신 사업자와 스웨덴의 미디어 그룹)가 출자하는 것으로서 노르웨이 지방의 1000만호 위성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키 위하여 작년에 설립되었다.

본 건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잡지·신문과 NSD가 방영 예정인 텔레비전 4국을 산하에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재벌 (Conglomerate)로서 미디어 그룹인 Kinnevik의 존재이다. 구주위원회는 본건 합작회사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의 위성 텔레비전 방송시장, 덴마크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시장 및 위성 유료 텔레비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강화 또는 형성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구주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출자자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반·밀트」경쟁정책 담당위

원은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작년 금지된 독일의 미디어 관계 합작회사가 수정 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주위원회의 결정은 NSD의 출자자 중에서 Kinnevik사를 제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NSD측은 현재의 출자자 3사의 지분을 인하고 핀란드로부터 참가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되 Kinnevik의 철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95. 7. 20. Financial Times)

구주위원회, 자동차 도로 병행수입 저지에 제재금

구주위원회는 BASF Lacke+Farben사(독일의 자동차도료 메이커로서 BASF그룹의 자회사)와 Accinauto S.A. 사(BASF Lacke+Farben사의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총대리점)가 자동차도료(Glasurit)의 병행수입을 저지하여 EC조약 제85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각각 270만 ECU, 1만 ECU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건은 영국의 자동차도료와 이와 관련된 상품의 병행수입을 하는 업자 2명으로부터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신고인은 Accinauto S.A.사에서 자동차용도료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동사는 1990년 여름 BASF Lac-

ke+Farben사의 지시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공급을 중지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용도료의 가격에 관하여 벨기에와 영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BASF사의 내부분석에 따르면 1991년에는 이러한 가격차가 적어도 20%까지 달하였으며 수출입 가격 및 소매가격의 쌍방을 볼 때에는 영국에서의 가격은 벨기에, 네덜란드 또는 독일의 가격보다 40%에서 70%가 비싸고, BASF Lacke+Farben사의 영국 자회사에 대한 판매 가격은 Accinauto S.A.사에 대한 것보다 비싸다.

구주위원회는 BASF Lacke+Farben사, BASF Coating&Inks 사(BASF Lacke+Farben사의 영국 자회사) 및 Accinauto S.A.사에 대하여 입회 검사를 실시한 후에 총대리점이 지정 지역 외의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전부를 BASF Lacke+Farben사에 넘기도록 계약상의 의무를 총대리점에 부과한 것이 경쟁 제한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계속하여 당해 의무를 이행한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1) 1986년 3월, 수입 총대리점은 신고인에 대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예외적인 허가를 BASF Lacke+Farben사로부터 얻었

다.

(2) 1989년 6월, BASF Lacke+Farben사는 수입대리점에 대하여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공급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수입 총대리점은 1989년 7월부터 1990년 5월 사이에 신고인에 대하여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1990년 5월 이후 자기의 계약상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존중하였다(신고인에 대한 공급을 중지함).

제재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주위원회는 공동체법을 크게 위반한 사실과 당해 대리점이 경제적으로 BASF Lacke+Farben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BASF Lacke+Farben사가 자기의 경제적 권익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95. 7. 12. 구주위원회)

유럽 사법재판소 제1심재판소, 구주위원회의 건설 담합 금지 결정을 지지

구주사법재판소 제1심재판소는 구주위원회가 1992년에 결정한 네덜란드의 건설담합에 대한 금지 결정이 무효라는 네덜란드의 건설업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구주위원회는 1980년 이후 네덜란드의 28개 건설업단체(전체 대형 또는 중견 건설회사 4천

사 이상이 가맹)를 구성원으로 하는 SPO가 어떤 계약에 대하여 경합하는 회사 중에서 1개사를 사전에 선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입찰 참가비용을 전부 낙찰주에 전가하되, 입찰 참가 시에는 SPO에 이를 통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운용해 온 통일규칙이 EC경쟁법 제85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여 1992년 2월, 이 규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합계 2250만 ECU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의 입찰담합에 대해 구주위원회가 최초로 내린 결정이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건설업 단체는 구주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절차상 및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구주사법재판소 제1심 재판소에 제소했다.

동 재판소는 구주위원회 결정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고 전기 단체에 전달된 동 결정 원본에 탈락된 내용이 있었던 것은 구주위원회 내부의 전자 우편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구주위원회의 판단에 찬성, 전기 건설단체의 공소를 기각했다.

(EC 업데이트 No. 62. 6월 22일자 및 국제상사법무 Vol. 23, No.7)

기타 유럽편

프랑스 경쟁평의회, 1994년 활동 보고 발표

프랑스 경쟁평의회는 지난 6월 15일 1994년의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쟁평의회는 1993년에 비해 공공 조달, 자동차학원 경영, 이삿집회사, 승객 수송 및 농업 분야에서 보다 많은 사건을 심사하였고 가격 협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경쟁평의회는 공공·민간의 조달관계 6건을 심사했으며, 보르도 도서관의 이전과 파리 경찰 본부의 표지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에 의한 사기 혐의로 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1994년 중에 경쟁협의회는 62건의 결정을 내렸다. 그 중 27건이 제재가 수반된 것이었다. 1994년 중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119개사이고 부과된 제재금의 합계는 6800만 프랑이다.

제재를 받은 직업단체는 28개 단체이고 과해진 제재금의 합계는 700만 프랑이다. 더구나, 1993년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69개사이고 과해진 제재금액은 1억900만 프랑이며, 제재를 받은 직업단체는 7개 단체이고 과해진 제재금의 합계는 75만 프랑이다.

경쟁평의회 결정 중 지난 3

월 15일까지 파리 항소법원에 항소된 사건은 22건이고, 파리 항소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13건 중 11건에 대하여 경쟁평의회 결정을 지지했다.

경쟁평의회는 가격 협정과는 별도로 약제사, 자동차 견본시장, 스키 보험 등 경쟁자를 배제하는 기업간 협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프랜차이즈 계약, 라이선스·노하우 협정, 공급자·판매업자간 관계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도 심사 대상으로 되었다.

공급자·판매업자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구매력의 문제이고, 거래 행위의 남용과의 사이에 균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쟁평의회 조니 부의장은 말했다.

경쟁평의회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게 승인된 상품의 구입을 의무로 하는 것은 미용실 체인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화된다고 판단했지만(Jacque Desange 사건), 유리 제조업자인 Saint-Gobain Vitrage가 체결한 라이선스 및 노하우 협정의 배타적인 유리 공급 제한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하여서는 경쟁평의회는 ODA(프랑스 텔레콤의 전화번호부 게재 광고 관리회사)에 대하여 광고대리점에 의한 시장 접근을 저지하였다고 하여 700만 프랑의 제재

금을 부과하는 한편, 프랑스 텔레콤에 대하여서는 100만 프랑의 제재금을 부과함과 함께 전화번호부 전체에 포함된 ODA 게재광고의 수정을 지시했다.

경쟁평의회는 1994년 중에 15건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1993년에는 9건이었다). 경제성 장관은 2건을 제외하고 경쟁평의회 의견의 조인을 좇았다.

경제성 장관은 Bertelsmann에 의한 Codes Rousseau의 매수를 Bertelsmann이 Ediser 또는 제3위의 운전지시기(運轉指示器) 제조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하고, 또 CLT에 의한 Fun Radio 및 M40의 매수를 승인했다.

경쟁평의회는 법안 및 일반경쟁 문제에 대한 의견서 17건을 제출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요금 징수소, 약제사의 행동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경쟁평의회 의견에 따라 정부는 현행규제의 점검을 중지하였다.

공적독점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인을 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경쟁평의회는 Electricite de France와 Gaz de France의 업무다각화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바르보 경쟁평의회장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운수, 전기 통신, 가스, 전기, 우편 분야는 모두 규제완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95. 6. 22. Antitrust & Trade Regulation Report, & 국제상사법무 Vol. 23, No.8)

이탈리아의 독점금지법 운용동향

이탈리아의 독점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이탈리아 같이 독특한 경제구조 하에서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특징과 내용 및 이에 대한 운용 실적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요지를 게재하였다.

가. 개황

1. 이탈리아는 구주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의 경제대국인데도 독점금지법이 없었으나 1990년에 24개 OECD가맹국 중 23번째로 독점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다(OECD 국가 중 독점법이 없는 나라는 터키뿐임).

2. 이탈리아가 독점법을 제정치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탈리아에는 INA(保險), Stet(電氣通信), Enel(電氣), Eni(石油가스), Alitalia(航空), IMI(動産銀行) 등 거대한 국영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사기업의 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탈리아에서는 독점문제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예를들면 정치적 거물이 전국방송조직 장악).

셋째, 이탈리아는 못솔리니 정권 붕괴 후 영미편에 들어 독일과 전쟁을 함으로써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지도에 의한 독점법 도입이 없었다는 점이다.

3. 독점법의 제정경위를 보면 1980년대 들어와서 EU통합 움직임을 계기로 국내적으로 독점법 제정 기운이 높아짐으로써 1986년 정부에 의해서 법 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8년 동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2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990년 9월 27일, 「경쟁 및 공정거래법」(Competition and Fair Trading)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동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4. 이탈리아 독점법은 「자유기업의 권리의 보호」를 규정한 이탈리아 헌법 제41조를 집행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독점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탈리아 독점법은 EU위원회의 관할 외의 사안만 적용하고 독점법 집행기구인 「경쟁시장보호위원회」는 사안이 EU위원회 소관인 경우 EU위원회에 처리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법률의 실제규정도 EU독점금지법과 유사할뿐 아니라 규정의 해석도 EU독점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1조 제4항).

나. 주요 내용

1. 카르텔 규제(제2조)

이탈리아 국내 시장 또는 그 중 상당 부분에서 가격, 시장 공급, 생산, 투자 및 기술 개발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행위는 무효가 된다.

(1) 구입 가격, 판매 가격, 기타 계약조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생산, 판로, 시장진입, 투자기술개발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시장 또는 공급원을 분할하는 경우

(4)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상대방을 부당하게 경쟁상 불리한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경우

(5) 계약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기 내용은 EEC조약 제85조와 유사하며 다만 생산과 유통의 개선, 기술 진보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로서 「경쟁시장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이 EEC조약과는 다른 점이다.

2. 집중규제(제6조)

기업의 집중행위(이 중에는 합병, 자산 취득, 지배권 취득, 합작투자가 포함됨)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경쟁시장보호위원회」는 당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는 집중기업의 국내 총매상고가 5,000억 리라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취득하는 기업의 국내 총매상고가 500억 리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쟁시장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제3조)

1개사 또는 복수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한 구입가격, 판매가격 기타 계약조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생산, 판로, 시장 진입, 투자, 기술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상대방을 부당하게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인수하는 것을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운용기관

주 운용기관은 「경쟁시장보호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은 상하 양원 의장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위원은 국무원, 회계검사원, 파기관원사, 경제학 및 법학전공 대학교수, 재

계에서 선출, 7년 임기에 제임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단 방송, 출판, 은행 등 특수분야는 소관성청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5. 절차

-위원회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및 조사에 유익한 서류의 제출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불복할 때에는 최종결산기 매출액의 1~10%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행정조치의 관할법원은 행정재판소가 되고, 무효·손해배상 청구소송·긴급정지명령을 구하는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경쟁시장보호위원회」는 법 제21조에 의해서 의회, 수상, 관계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운용실적

<위반 사건>

(1993년 1월~1994년 3월)

① 카르텔	10건
② 기업측이 자주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한 카르텔	6건
③ 지배적 지위의 남용	8건
④ 집중 행위	2건
⑤ 부당 표시	85건

라. 결론

경쟁자체를 기피했던 이탈리아에서 「경쟁시장보호위원회」의 활동은 높히 평가할 만하다. 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기반 정비를 위한 정부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언을 하고 있는 등 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점금지법 개정

오스트레일리아의 독점금지법인 1994년 거래관행법 개정법이 올해 6월말에 의회를 통과, 지난 7월 20일 재가를 얻어 발효하였다. 이번 개정은 1993년 1월의 개정에 뒤이은 것이다.

개정 절차는 1991년 연방정부, 주(州) 및 준주(準州)의 정부가 경쟁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화(approach)하자는 검토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에는 1993년 8월, 국내경쟁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힐마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쟁정책을 재검토하여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거래관행법 적용범위의 확대, 경쟁제한규제법의 재검토, 공적 독점 부분에 대한 경쟁의 도입 등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키팅 수상이 경쟁촉진 시책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행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상기 보고서에 따라서 광범한 정부간 협의와 공적인 자문을 거쳐 1995년 3월 거래관행법개정안과 헌법상 제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개의 포괄적인 정부간 협정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독점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주 또는 준주에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하든 거래관행법 제4장(경쟁제한 규제법규)의 금지규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2) 주, 준주의 정부기업에 대한 법 적용의 면제를 철폐한다.

(3)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주내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헌법상의 제약에 의해 거래관행법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은 경쟁코드(Competition Code)를 창설하여 법인(corporation)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person)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거래관행법 제4장에 규정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4) 거래관행법에 제3A장이 부가되었다. 제3A장은 배전 및 철도 설비라는 일정한 필요적인 프라 설비 서비스에의 진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률상 대강의 제도를 정하고 있다.

(5) 거래관행위원회(거래관행법의 시행기관) 및 가격감시위원회(Price Surveillance Authority)를 통합하여, 새로

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를 설치한다.

(6) 자문기관으로서, 전국경쟁평의회(NCC)를 설치한다.

(7) 거래관행심판소(인가에 관한 거래관행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함)는 명칭을 변경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심판소로 한다. 동 심판소는 새로이 위의 (4)의 진입관계 결정의 상소기관으로 한다.

거래관행법 제4장 관계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1) ACCC는 경쟁자간의 상품에 관한 가격협정을 인가할 수 있다. 50 이상의 참가자간의 권장가격협정에 대한 적용면제를 폐지한다(제45조).

(2) 제3자 강제(third-line forcing)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제47조).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확대하여 서비스에도 적용한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인가할 수 있다(제48조).

(4) 가격 차별의 금지규정을 폐지한다(제49조). 개정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가. 제한적 거래에 관한 규정 및 경쟁코드는 95년 8월 17일

나. 경쟁·소비자위원회 및 전국경쟁평의회의 설치, 위의 (4)의 진입에 관한 법적 제도는 1995년 7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다. 가격감시법의 개정 및 경쟁·소비자위원회에의 권한의 양도는 1995년 7월 20일부터 6

개월 이하다.

다. 주 또는 준주의 정부기업에 대한 법적용은 1995년 7월 20일부터 12개월 후 또한 주 또는 준주의 법적용은 1995년 8월 17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 집행조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소비자위원회(ACC, 1995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

위원장, 부위원장,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적어도 1명의 상근위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1995년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

경쟁관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전국적 기관으로 거래관행법 제4장, 제4A장, 제5장, 제5A장 및 경쟁 코드의 제 규정, 가격감시법을 소관으로 한다.

또한, 가격감시법에 대하여는 가격감시 하에 있는 사업에의 가격인상 계획의 심사, 가격설정 행위 및 그 관련사항의 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연방정부 담당장관에게 보고, 산업 또는 기업의 가격, 비용 및 이윤의 감시와 그 결과의 연방정부 담당장관에게 보고를 소관으로 한다.

(2) 전국경쟁평의회

1명의 위원장과 최고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거래관행법

제3A장에 의하여 진입 신청에 대해 권고를 행하고, 주 또는 준주의 정부기업의 가격을 감시하는 외에, 경쟁 원칙에 관한 협정(Competition Principle Agreement)에 대해 검토를 행한다.

(3)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심판소

연방재판소의 판사인 재판장과 산업, 상업, 경제, 법률 등에 지식·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임명된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ACCC가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해 내린 결정의 재심사, 해외에서의 합병에 관한 공표, 장관 또는 ACCC가 내린 진입에 대한 결정의 재심사를 소관으로 한다. (거래관행위원회 홍보지 No. 20 & 국제상사법무, Vol. 23, No. 9, 1995)

독일 연방카르텔청, CD-ROM 제품 재판 금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1994년 5월, C.H.Beck사(뮌헨 소재)에 의한 법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CD-ROM제품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였다. 독일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가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금지법(독일의 독점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금지의 이유로 CD-ROM에 부속으로 소

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CD-ROM 제품은 서점뿐 아니라 전자부품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본건의 쟁점은 법률에 관한 전문잡지 및 세무상담과 경제연구인을 위한 전문서를 수록하고 응용물(Application)을 첨부한 출판사 발행의 CD-ROM 제품이 출판물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만일 출판물인 경우 출판사는 CD-ROM제품에 관하여 재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본건 CD-ROM 제품이 읽는 것보다는 응용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판물의 적용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H.Beck사는 이 결정에 불복, 공소를 하였으나 벌린 고등법원은 1995년 5월 17일 연방카르텔청의 주장을 인정, 공소를 기각했다. C.H.Beck사는 독일의 서점조합과 협의, 최고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95. 5. 18. 다게즈·슈피겔지) ■